■ 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61-184.
http://doi.org/10.17948/kcs.2020..87.161

『家禮疾書』와 『星湖禮式』의 역사성*

전성건(全聖健)**

목 차

1. 서론
2. 성호의 학문과 예학
3. 『가례질서』와 가례이해
4. 『성호예식』과 서인가례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성호 이익의 『가례질서』와 『성호예식』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그가 제시한 서인가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성호는 퇴계를 사숙하였고 근기 퇴계학파의 종장으로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한편, 영남 남인과의 교류를 통해 퇴계학파의 일원으로서 퇴계의 철학과 사상을 진전시키고 확장하고자 하였다.

예학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성호는 퇴계의 예학을 계승하는 한편, 사계 김장생 등

* 본 논문은 2019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축적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세대 국학연구원과의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논평자의 질의로, 성호 예학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시대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례질서』와 『성호예식』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부분은 해당 장에서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다시 한 번 논평자로 수고해주신 김현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국립안동대 동양철학과 조교수.

의 노론 예학자들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예설을 창출하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가례질서』와 『성호예식』이다. 특히 『성호예식』은 사대부 가문에서 행하는 예식의 토대가 되는 『가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서인가례를 창출하여 가례시행의 확장을 도모한다. 이는 자신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가례』를 근간으로 작성된 예식을 사대부의 예식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물론 서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예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분질서에 맞는 가례 서물을 작성한 것이다.

당대의 『가례』연구는 주희가 중년에 작성했다고 전해지는 『가례』를 이른바 만년정설을 찾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훈고와 고증 그리고 행례의 측면을 두루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성호는 서인가례를 창출하여 사대부 이외의 필서들까지 행례할 수 있는 가례 서물을 작성하여 의례실천의 확장을 꾀하였다. 그가 대종과 소종의 일족들을 의례로 규합하고 종계를 만든 것 등은 그 가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촌 사회의 일반 백성들의 의례적 실천에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이익, 『가례』, 『가례질서』, 『성호예식』, 서인가례.

1. 서론

星湖 李瀷(1681-1763)의 대표적인 禮書는 『가례질서』와 『성호예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례질서』는 晦庵 朱熹(1130-1200)의 『가례』를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고, 『성호예식』은 자신의 집안에서 실행할 가례의 規式을 마련한 것이다. 『가례질서』는 「通禮」 101조목, 「冠禮」 56조목, 「婚禮」 57조목, 「喪禮」 383조목, 祭禮 25조목으로 총 742조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字句의 考證, 古禮와의 同異, 古禮와 俗禮의 절충을 도모한 저술이다.[1] 물론, 『가례질서』를 포함하여 성호의 疾書類 저술은 모두 本旨의 탐

1) 盧仁淑, 「星湖 李瀷의 《家禮疾書》考—禮學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一考察—」, 『인문학연구』 제20집, 중앙대 인문학연구소, 1993 참조. 이 논문에서는 성호가 이른바 주희의 『가례』 원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儀禮』→『溫公書儀』→『家禮』]과 달리 독창적인 견해를 새롭게 피력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周禮』→『通典』→『家禮』가 그것이다. 그러나 『가례질서』에서 확인한 것은, 각각의 조목에 나타나는 禮式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가례』의 어떤 조목은 『통전』의 어떤 조목에서 유래한 것임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朝夕哭奠의 경우 "『가례』의 유래는 『통전』으로, 『통전』의 설명이 하나같이 『가례』와 같다."[『家禮』之所本則『通典』, 而『通典』之說一如『家禮』]고 말한 경우가 있고, 后土祭에 降神의 경우, "『가례』는 『書儀』에서 나오고, 『서의』는 『통전』에서 나온 것이

구를 위한 그의 懷疑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성호예식』은 손자 九煥의 관례와 혼례를 치르면서 「刪節冠儀」와 「娶婦儀」를, 딸을 시집보내면서 「嫁女儀」를, 부인의 상을 당해서 「喪威日錄」과 「喪威續錄」을, 집안의 제사와 후사 문제를 위해 「家祭法」, 「參禮式」, 「墓祭式」, 「忌祭式」, 「喪內行祭式」 등 각종 가례의 규식을 정비한 것이다. 부록으로 「避亂埋主說」과 「修墓記」가 있다. 이것들은 성호 사후 조카 秉休가 편집하고 종손 森煥과 家煥이 교정하여 『성호예식』으로 묶였다. 1817년에 尹東奎가 쓴 서문과 1829년에 安鼎福이 쓴 「星湖禮式序」가 「星湖先生禮式序」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다. 안정복의 연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카 병휴가 성호의 예식들을 일일이 모아 편집하고, 삼환과 가환에게 교정을 지시하여 대략 완성이 되자, 윤동규와 안정복에게 서문을 부탁하여 책의 완성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성호 예학 자체에 대한 주제별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承重과 立後'를 중심으로 한 宗統의 理想을 주제로 한 연구가 있는데, 종통의 계승은 황실과 대부 그리고 사와 서인 등 모두에게 적용해야할 大一統의 원리가 있다는 점 및 地位·親疏·義理에 따라 복제와 종통이 이원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 그것이다.[3] 행례의 실천 사례를 다룬 것도 冠婚禮를 다룬 2편의 논문뿐이다.[4] 이밖에는 성호와 다산 그리고 許傳의 婚禮論을 비교한 논문[5] 및 성호학파와 가례담론 등을 통해서 성호 예학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논문들이다.[6]

다."[『家禮』出於『書儀』, 『書儀』出於『通典』]고 말한 경우도 있으며, 霎의 경우, "『가례』는 『통전』을 근본으로 하고, 『통전』은 『주례·봉인·소』를 근본으로 한다."[『家禮』本於『通典』, 『通典』本於『周禮·縫人·疏』]고 말한 경우도 있다.

2) 崔錫起, 「17-18세기의 學術動向과 星湖 李瀷의 經學」, 『남명학연구』 제16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2003, 1면.

3) 김남이, 「18세기 喪·祭禮 실천과 宗統의 이상—星湖 李瀷의 承重·立後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35집, 동양고전학회, 2009.

4) 김정민, 「星湖 李瀷의 禮思想과 實踐의 實例—『星湖先生禮式』 所在 冠婚禮의 境遇—」, 『동양예학』 제16집, 동양예학회, 2007.

5) 서정화, 「조선후기 실학파의 혼례론—李瀷, 丁若鏞, 許傳을 中心으로」, 『한국철학논집』 제40호, 한국철학사연구회, 2014.

6) 이봉규, 「실학의 예론—성호학파의 예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24집, 한국사상사학회, 2005; 장동우, 「조선후기 가례담론의 등장배경과 지역적 특색—『주자가례』에 대한 주석서를 중심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호는 주희의 『가례』를 조목별로 검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가례질서』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一王之法'[7]으로서의 가례를 정립하기 위해 『가례』를 보완하는 문제의식을 지닌 것이다.[8] 또 성호는 퇴계의 예설을 제자들과 정리하여 『李先生禮說分類』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퇴계 예학을 계승하는 동시에 沙溪 禮學에 대한 대응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9] 마지막으로, 성호가 지은 『성호예식』은 자신의 집안에서 실행할 가례의 규식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 성호 문하에서 준행되고 또 지속적으로 보완되었다. 요컨대, 성호 예학의 문제의식은 '신분에 맞는 예제의 시행'과 '불필요한 비용의 절약'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다는 것이다.[10]

이 글은 『가례질서』와 『성호예식』의 역사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역사성이란 이른바 시대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성호의 예학이 갖는 시대정신을 고구하고자 한 것이다.[11] 특히 앞서 언급한 '신분에 맞는 예제의 실행'과 '불필요한 비용의 절약'의 문제의식이 당대에 유의미하게 작동했던 이유를 성호의 『가례질서』와 『성호예식』을 중심으로 확인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으로」, 『국학연구』 제13집, 한국국학진흥원, 2008; 전성건, 「『사례가식』 연구」, 『다산학』 제19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1.

7) 성호가 제시하는 一王之制나 一王之法은 성호 당대에 『가례』가 사대부들의 준거가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단순하게 제왕의 법제나 한 왕조의 법제를 말했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가례』를 고례와 시속을 참작하고자 했던 당대 유학자들의 준거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8) 그러나 성호는 『가례』를 대부 이상을 위한 예설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자신의 신분에 맞게 새롭게 구상하려고 했던 士庶禮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듯하다.

9) 이봉규, 앞의 글, 113-114면.

10) 장동우, 앞의 글, 97-98면.

11) 논평자는 성호의 예학적 문제의식이, '신분에 맞는 예제의 실행'과 '불필요한 비용의 절약' 등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가 저술한 『성호예식』은 성호 자신의 집안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및 성호 사후 성호학맥의 학자들이 성호의 지나친 간소화를 비판하며 『가례』의 체계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성호의 문제의식과 예서편찬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기가 다소 곤란하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역사성은 성호의 문제의식이 匹庶들도 관혼상제의 예식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유교의례의 참여 범주를 이른바 사대부에 제한되지 않게 하였다는 점 및 대종과 소종을 포함한 성호 일족 전체의 의례의 일상화, 그리고 종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모든 백성이 유교적 의례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시된 것이다.

2. 성호의 학문과 예학

> 경전을 토론하여 지은 글이 집안에 가득하니, 그 대요만 든다면 經學에 있어서는 朱子의 集註를 통해 六經의 뜻을 탐구하였는데 그 속에는 선유들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것들도 많았으니, 모두가 깊이 사고하여 자득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禮를 논한 것은 반드시 사치함을 버리고 검약을 따르는 것이었으며, 經世濟民을 논한 것은 반드시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는 것이었으니, 모두 근본을 탐구하고 요점을 제시하였으며 각각 조목이 있어 그대로 시행할 만하므로, 世儒들의 진부하고 쓸모없는 空言과는 다르다.[12]

貞山 李秉休(1710-1776)는 성호의 학문을 經學과 禮學 그리고 經世濟民學 세 방면에서 정리하였다. 경학의 경우 晦庵 朱熹의 四書集註를 통해 六經의 뜻을 탐구하였는데, 모두 自得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고, 예학의 경우 奢侈를 버리고 儉約을 따르는 것이었으며, 경세제민학은 損益을 통해 실행할 만한 것을 제안했다고 하였다.[13] 성호는 「論語疾書序」에서 "이 책을 보고자 하면 먼저 주자의 註를 연구해야 하고, 이 주를 연구하고자 하면, 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공자의 마음 또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14]라고 하였다. 이는 회암의 주석을 답습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확인하겠다는 말이다. 이를 邵南 尹東奎(1695-1773)는 '爲學心法'이라고 명명하였다.[15]

이 글에서는 성호의 예학 가운데 그의 家禮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행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호의 종손 木齋 李森煥(1729-1813)은 「書星湖禮式後」에

---

12) 李秉休, 「家狀」, 『星湖全集』 부록 권1. "討論經傳, 著書滿家, 若擧其大要, 則其於經學, 由集註以溯六經之旨, 而間多先儒之所未發, 皆出於深思自得也. 其論禮, 必棄奢而從儉. 其論經濟, 必損上而益下, 皆探本挈要, 各有科條, 可擧而措, 異乎世儒陳腐無用之空言也."

13) '損上而益下'는 風雷益괘의 彖傳에 나오는 말이다. "益은 위를 덜어 아래에 더해주니 백성의 기뻐함이 무궁하고, 위로부터 아래에 낮추니 그 도가 크게 빛난다."[彖曰: 益, 損上益下, 民說无疆, 自上下下, 其道大光.] 程傳에서는 "위의 괘가 덜려 아래 괘에 더해졌으니, 위를 덜어 아래에 더해줌은 덜어서 유익함이 되는 것이니, 이는 의리로써 말한 것이다. 아래가 후하면 위가 편안해진다. 그러므로 아래를 더해줌이 유익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익괘의 단사가 治民은 물론 濟民과 관련하여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한 것인 듯하다.

14) 李瀷, 「論語疾書序」, 『星湖全集』 권49. "欲看此書, 須先究此註, 欲究此註, 須先得其心, 得朱子之心. 夫子之心, 又庶幾可推也."

15) 尹東奎, 「行狀」, 『星湖全集』 부록 권1. "蓋讀書解義, 辨別篤志, 此程朱以來爲學心法."

서 『성호예식』의 성립 과정과 성호 예학의 연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해동의 전 지역은 평소 예의로 칭해졌고 집집마다 『가례』를 배치해 두어 사람들이 儀文을 익혔다. (…) 우리 종조부이신 성호 선생은 이것[富豪들은 참람하게 예를 행하고 寒士들은 예를 행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가례』를 연구하여 『가례질서』 1편을 저술하여 정밀한 뜻을 발휘하였다. 또 家塾의 여러 자제들과 四禮의 의절들을 정하고 각각에 맞는 설을 지었다. 그 大經大義는 모두 『의례』와 『가례』에서 나온 것으로 자잘한 문식과 절차에 있어서는 간혹 또한 변통하였는데, 시의와 시속에 부합하였으니, 이 역시 『가례』의 義例이다. (…) 다만 그 글들이 『유집』에 산견되어 열람하기에 불편하였다. 우리 先人께서 손수 교열하고 모아서 1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성호선생예식』이라고 지목하고는 자손들에게 남겼다. 『李氏家禮』를 만든 것이니, 師友들 사이에서 듣고 기뻐하며 행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 從弟 家煥이 그것을 널리 전하는 것을 도모하여 재물을 내어 책판을 만들었고, 또 문인과 자제들의 논설이 있어 선생께서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것을 아울러 함께 채록하여 각 조목 아래에 附註하여 책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었다. (…) 대개 예가 번잡하면 구차해지고, 예가 인정을 이기면 離反된다. 오직 퇴계 선생께서 주자의 종지를 홀로 얻었으니, 퇴계의 예는 모두 간이하여 행하기 쉽고, 검소하여 따르기 쉬었다. 한강은 퇴계 선생에게 배웠고, 許厚는 한강에게서 배웠고, 허목은 허후와 사촌으로 강학하여 전수받은 바가 많았다. 우리고조 헌부공은 정언교에게 배웠는데, 정언교는 미수와 동문으로 서로를 좋게 생각했다. 증왕고 매산공은 미수와 친하게 종유하였다. 선생의 예는 가정에서 전수받아 익힌 것이 많았으니, 이상이 예학의 연원이다. 그 핵심을 고구한 것이 매우 정밀하였고, 참작한 것이 중을 얻었으니, 또한 모두 선생께서 자득한 것이다.[16]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집집마다 주희의 『가례』를 배치해두고 의절을 익힌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호

16) 李森煥, 「書星湖禮式後」, 『少眉山房藏』 권6. "海東一域, 素以禮義稱, 戶置『家禮』, 人習儀文. (…) 我從祖星湖先生, 爲是之懼, 研窮『家禮』, 著『疾書』一篇, 闡發精義. 又與家塾子弟定四禮儀節, 各有成說. 若其大經大義, 一本於『儀禮』·『家禮』, 微文瑣節, 間亦變而通之, 以合於從宜從俗之文, 此又『家禮』之義例也. (…) 第其書散見『遺集』, 不便觀閱, 我先人手自讎校, 彙爲一部, 目之曰『星湖先生禮式』, 以遺子孫. 作『李氏家禮』, 士友之間, 聞風欽悅, 思欲倣行者衆. 從弟家煥謀廣其傳, 捐貲捃裒, 又有門人子弟之論說, 發先生所未發者則亦幷採取, 附註各條之下, 俾得爲成書. (…) 盖禮煩則拘, 禮勝則離. 惟退陶李子, 獨得朱子之旨, 其禮皆簡而易行, 儉而易從. 鄭寒岡學於李子, 許觀雪學於寒岡, 眉叟與觀雪爲同堂兄弟, 多所講受. 我高祖憲府公學於鄭苾山, 與眉叟同門相善, 故曾王考梅山公, 從眉叟遊最熟. 先生之禮, 傳習於家庭者爲多, 此禮學淵源所自, 而其考覈精微, 斟酌得中則又皆先生之自得云. 庚戌仲秋, 從孫森煥敬書."

는, 부호들이 참람하게 예를 행하고 빈궁한 처지의 한사들이 예를 행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걱정하여 『가례』를 연구하여 『가례질서』 1편을 저술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례』가 주희의 만년정론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공간을 달리하는 조선의 상황에 맞게 변통할 필요가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가례』를 기준으로 삼아 만들어진 『가례질서』는 『가례』에 대한 疑問점을 이른바 독서기의 형식으로 저술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의문과 自答은 『가례』가 성호 당시의 時宜와 時俗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록한 자답으로서의 儀禮가 이후 일정 정도 『성호예식』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성호예식』은 성호가 지은 규식뿐만 아니라, 문인과 자제들이 정한 논설을 함께 附註로 부기하여 열람하는 이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성호예식』의 핵심은 번잡한 예를 다스려 실행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호의 예학은 집안에서 전수받은 것이 많았는데, 그 연원을 살펴보면, 성호는 부친 梅山 李夏鎭(1628-1682)으로부터 예학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산은 眉叟 許穆(1595-1682)과 매우 친밀하게 종유하였다. 다시 매산의 아버지 헌부공은 慈山 鄭彦謇(1545-1612)에게서 배웠는데, 총산은 미수와 동문으로 서로를 좋게 생각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미수 허목은 觀雪 許厚(1588-1661)와 사촌으로 그들은 모두 寒岡 鄭逑(1543-1620)에게서 수학하였고, 한강은 퇴계 선생에게 배웠다. 이처럼 성호의 예학은 퇴계와 연결되었던 것이다.

> 禮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하기를, "주자의 『家禮』는 바로 일왕의 법제이니, 지금의 예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바이다. 그러나 고금의 사정이 다르고 귀천의 분수가 달라진 것은 또 바꾸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침내 『家祭法』과 『喪威前後錄』을 지어 一家의 禮가 되게 하였다.[17]

성호는 주희의 『가례』를 '一王之制'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고금의 사정과

17) 李秉休, 「家狀」, 『星湖全集』 附錄 권1. "其於禮則常謂朱子『家禮』, 便是一王之制. 今之行禮者, 所當必遵. 然其古今異宜, 貴賤殊分者, 又不容不變, 故乃撰『家祭法』『喪威前後錄』, 俾爲一家之禮."

귀천의 분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변통이 없을 수가 없기에 『성호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가례질서』와 『성호예식』의 방향이 『가례』나 조선예학의 일반적인 흐름과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근거로 성호는 國制의 규정과 穌齋 盧守愼(1515-1590)과 栗谷 李珥(1536-1584)의 주장을 제시한다.[18]

성호가 소재와 율곡을 거론한 것은 이들이 주희의 『가례』를 근거로 한 四代奉祀를 따르지 않았고, 『경국대전』의 三代奉祀를 따를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19] 國制로서의 『경국대전』에는 6품 이상은 3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하고, 서인은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제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성호 당대에는 官品의 고하를 논하지 않고 『가례』를 내세워 사대봉사하는 규례를 통용하고, 관품이 없는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대봉사를 따르려고 하니, 이는 참람한 짓이라고 성토하였다.

3. 『가례질서』와 가례이해

>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예를 제정하는 사람이 없어 나라마다 풍속을 달리하고 집안마다 습속을 달리하였으므로 누구나 법칙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옛것을 고수하는 자는 뱃전에 표시를 해 두었다가 칼을 찾으려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時俗을 따르는 자는 피리를 어루만지며 해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朱子가 그것을 근심하여 『가례』를 편찬하자 온 세상이 그것을 따랐으니, 곧 '일왕의 법이다.' (…) 『가례』라는 것은 죽간을 만들 때에 세우는 기준과도 같은 것이니, 기준이 있다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이 적을 것이다. (…) 사람들이 "喪禮와 祭禮는 조상의 예법을 따라야 한다. 바꾸는 것은

18) 李秉休, 「家狀」, 『星湖全集』 附錄 권1. "其言曰國制六品以上祭三代, 先儒如穌齋栗谷從之, 不用『文公家禮』. 又七品以下祭二代, 庶人只祭考妣, 商其意六品以上用大夫之禮, 七品以下用士禮也. 今人不論官品高下, 以『家禮』爲諉, 通用四世之規, 而至於無官匹庶, 皆效顰爲之, 寧有是理? 且大夫三世有兩說, 「祭法」及於曾祖, 「王制」一昭一穆與始祖爲三, 商其義「王制」爲得也. 今制別子之外, 有功勳者, 又許立宗而不祧其主, 則有始祖矣. 恐不可祭始祖, 而又添曾祖一位也. 『家禮』雖許四世, 此不過當時不立始祖之廟故也. 若祭始祖, 與公侯何別?"

19) 소재 노수신은 『蘇齋集』 「重答盧監司書」에서, 율곡 이이는 『擊蒙要訣』 「祠堂圖·時祭圖」에서 각각 삼대봉사를 언급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견해에 따르면,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성호 이익 등의 先正은 모두 삼대봉사를 주장했는데, 사계 김장생에 의해 사대봉사가 정착되었다고 하였다. 丁若鏞, 「祭法考」, 『喪儀節要』 권2 참조.

> 망령된 짓이다."라고 늘 말하는데, 이것은 아주 옳지 않다. (…) 비록 그렇지만, 실제로 이 책[『가례』]은 완전하게 勘定을 거친 책이 아니어서 마음을 집중하여 읽지 않으면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종래의 여러 학자들은 대충 보아 넘겼다. 내가 이에 始末을 궁구하고 차이점을 구별한 지가 십여 년이다. 이제 조금 갖추어졌으므로 마침내 종합하여 이 책을 지었다.[20]

성호는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은 이유를 制禮無人에서 찾고 있다. 지나간 것만을 고수하고 시속만을 따르려는 자들을 刻舟求劍과 撫籥疑日의 고사를 비유하여 힐난하고 있다. 『呂氏春秋』「察今」에 "초나라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칼이 배에서 물속으로 떨어졌다. 급히 뱃전에 칼자국을 내어 표시하면서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라고 하였다. 배가 닿자 칼자국이 있는 뱃전 밑 물속으로 뛰어들어 칼을 찾았다. 배는 움직였고 칼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처럼 칼을 찾으니 어찌 의아하지 않겠는가?"[21]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나간 것을 고수하는 잘못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蘇軾이 지은 「日喩」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눈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해의 형상은 구리 쟁반과 같소.'라고 하자 쟁반을 두드려 그 소리를 들었다. 뒷날 또 어떤 사람이 '해의 빛은 초와 같소.'라고 하자 초를 더듬어서 그 형상을 가늠했다. 뒷날 피리를 만져 보고는 그것을 해라고 생각했다. 해가 종이나 피리와는 거리가 멀지만 눈먼 사람이 그 차이를 모르는 것은 그가 직접 본 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알려고 했기 때문이다."[22]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自得하지 못한 잘못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20) 李瀷, 「家禮疾書序」, 『星湖全集』 권49. "天下之不治久矣. 制禮無人, 國異風, 家異俗, 靡靡乎莫之儀則, 故守古者刻舟而求劒也, 循今者撫籥而疑日也. 朱子有憂之, 爲之『家禮』, 而擧天下從之, 便是一王之法也. (…) 是以『家禮』者, 制筵之立則也. 則之所在, 其不齊者寡矣. (…) 人之恒言曰: "喪祭從先祖, 變動者妄也." 此大不然. (…) 雖然此書實有未盡勘定, 非極意繙閱, 有未可詳者, 從來諸儒蓋草草耳. 余於是翫心原委, 區別異同, 十數年而稍備, 遂合爲此書."

21) 『呂氏春秋』 察今. "楚人有涉江者, 其劒自舟中墜於水, 遽契其舟曰, 是吾劒之所從墜. 舟止, 從其所契者, 入水求之. 舟已行矣而劒不行, 求劒若此, 不亦惑乎?"

22) 蘇軾, 「日喩」, 『東坡全集』 권100. "生而眇者不識日, 問之有目者. 或告之曰: 日之狀如銅盤. 扣槃而得其聲, 他日聞鐘以爲日也. 或告之曰: 日之光如燭. 捫燭而得其形, 他日揣籥以爲日也. 日之與鐘籥亦遠矣, 而眇者不知其異, 以其未嘗見而求之人也."

주희의 『가례』가 이른바 '一王之法'으로서 죽간을 만들 때에 세우는 기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가례』 자체가 완전하게 勘定을 거친 책도 아니고,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종래의 학자들은 대충 보아 넘겼을 뿐, 시말을 따져보고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했다. 『가례질서』를 저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주 선생의 『가례』가 읽기 어려워진 지 오래되었다. 『가례』의 禮說은 간혹 한때의 便宜에서 나와서 古禮에서 증험할 수 없거나 時俗에 비추어 보아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예를 들면 밥과 국의 위치를 바꾸어 진설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그리고 책이 주자의 중년에 이루어져 만년 이후의 정론과 자못 합치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예를 들면 期年의 상복에 負版, 衰, 適을 두는 따위가 그것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도둑을 맞는 일을 겪어서 그 사이에 뒤섞이고 결락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예를 들면 參禮에 徹床하는 절차가 없는 따위가 그것이다. (…) 『가례』를 연구하는 사람은 古經을 참고하여 근본을 수립하고, 註疏를 참고하여 의미를 확장하며, 역대의 沿革을 참고하여 변통을 관찰하고, 선유들의 학설을 참고하여 뜻을 밝혀야 하니, 이렇게 하여야 『가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3)

『家禮附釋』은 太湖 李元鎭(1594-1665)의 저술이다. 성호는 『가례부석』에 서문을 쓰면서 주희의 『가례』를 독해하기 어려운 점을 제시하였다. 주희의 예설이 편의에서 나온 점, 중년의 예설과 만년의 정론이 다른점, 그리고 『가례』 자체가 도둑맞은 사이 잘못된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가례』를 연구하는 사람은 古經을 참고하여 근본을 먼저 수립해야 하고, 그 다음 註疏를 참고하여 그 의미를 확장하고, 역대의 연혁을 참고하여 변통한 것들을 관찰하고, 선유들이 발명한 학설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호는 이렇게 할 때에 『가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인용문과 관련된 문제를 성호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첫째, 간혹 일시적인 便宜에서 나왔기에 古禮를 증험할 수 없거나 시속에 견주어도 합당

23) 李瀷, 「家禮附釋序」, 『星湖全集』 권49. "朱先生『家禮』書, 難讀久矣. 其爲說, 或出一時之宜, 而在古無證, 援今不諧, 如飯羹易設之類是也. 書成於中年, 頗與晩來定論不合, 如期喪有負版衰適之類是也. 既經童行之手, 間多有錯缺難曉, 如參禮無徹之類是也. (…) 是以治『家禮』者, 參之以古經, 以立其本; 參之以註疏, 以博其趣; 參之以歷代, 以觀其變通; 參之以先儒氏, 以發其義, 如是可以得之矣."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羹飯易設'과 같은 것이다. 이것과 관련한 기록이 『가례질서』에 「附設饌尙右辨」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 살펴보건대, 『가례』 設饌 조목에는 밥은 오른쪽에 국은 왼쪽에 둔다고 하였다. 설명하는 이가, "神道는 오른쪽을 숭상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다. 마치 坐次가 서쪽을 윗자리로 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좌차가 서쪽을 윗자리로 삼는 것은 신도가 그러한 것만이 아니니, 모든 예가 모두 이와 같다. 주자가 「여정보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대개 제사는 흠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흠향은 편하게 드시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을 바꾸어 오른쪽에 밥을 둔다면, 귀신이 그것을 편하게 여기겠는가? 옛날 제사는 반드시 시동이 있었고, 시동은 본래 살아 있는 사람이었다. 비록 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더라도, 어떻게 마시고 먹는 도리가 살아 있는 사람과 같지 않겠는가? 사계 김장생이 말하기를 "「특생궤식례」에 '俎를 豆의 동쪽에 놓고, 黍와 稷을 담은 2敦를 豆의 남쪽에 놓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고, 또 鉶과 芼를 두의 남쪽에 놓되, 남쪽에서부터 놓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국은 마땅히 서쪽에 놓아야 하고, 밥은 의당 동쪽에 놓아야 한다. 『가례』는 아마도 당시 俗禮에서 나온 듯하다."[24]

『가례』 설찬 조목을 살펴보면, 밥은 오른쪽에 국은 왼쪽에 둔다고 하였다. 神道는 오른쪽을 숭상하기에 살아 있는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성호는 이와는 다르게 말한다. 제사의 목적은 귀신이 흠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귀신이 편안하게 흠향하려면 흠향하는 것도 살아 있었을 때와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시동을 사례로 들면서 부연 설명한다. 마시고 먹는 방법은 살아 있는 사람과 귀신이 모두 동일하다는 논리이다. 때문에 『가례』의 이 내용은 고례가 아니라, 당시의 속례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가례질서』의 안목은 다시 『성호예식』 「제식」에도 등장한다.

---

24) 李瀷, 「附設饌尙右辨」, 『家禮疾書』. "按, 『家禮』'設饌', 飯居右, 羹居左, 說者謂神道尙右, 故與生人有別, 如坐次之西上也. 此甚不然. 坐之西上, 不但神道爲然, 凡禮皆如此, 朱子『答余正甫書』詳言之. 蓋祭之欲其享之也, 享之宜欲其便食, 若易而右飯, 神其便之耶? 古者, 祭必有尸, 尸本生人, 雖曰神之所依, 而豈有飮食之道與生人不同? 金沙溪云: '『特牲饋食禮』: 俎入設于豆東, 設兩敦黍稷于俎南西上, 及鉶芼于豆南南陳.' 觀此, 羹宜居西, 飯宜居東, 『家禮』恐是出於當時俗禮也."

> 『가례』에 따르면, 국과 밥이 각각 한 주발이다. 국은 곧 始祖祭에서 이른바 大羹이니, 밥과 같이 진설하는 것이다. 시속에 따라 채소를 섞어도 무방하다. 『禮記』「曲禮」에 "밥은 사람의 왼쪽에 두고, 국은 사람의 오른쪽에 둔다."라고 하였으니, 먹기에 편하기 때문이다. 『가례』에서 비록 국은 왼쪽에 진설하고, 밥은 오른쪽에 진설한다고 하였으나, 모든 음식을 진설할 때에 모두 산 사람을 섬기는 방법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어찌 꼭 국과 밥만이 유독 다르겠는가? 古禮를 상고해 보아도 또한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생각건대, 당시의 풍속이었는데, 주자가 따른 것인 듯하다. 지금 풍속에도 밥이 왼쪽이고 국이 오른쪽이니, 어길 수 없을 듯하다. 이른바 "군자는 예를 행할 때에 고국의 풍속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다.[25]

始祖祭는 『가례』「제례」에 실려 있는 初祖에게 지내는 제사를 가리킨다. 大羹은 五味로 조미하지 않은 국을 말한다. 『가례』에 국은 왼쪽에, 밥은 오른쪽에 진설한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제례」 초조 조목 진찬에 "밥은 잔의 서쪽에, 大羹은 잔의 동쪽에, 鉶羹은 대갱의 동쪽에 진설한다."고 한 것을 미루어 진설하는 위치를 이렇게 비정한 것이다. 음식을 진설할 때에는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이를 섬기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여 『가례』의 조목을 바로 잡고, 그것을 성호 자신의 집안에서 사용할 祭式으로 정리하였던 것이다.

둘째, 『가례』는 주희가 중년에 저술한 것으로 만년정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면, 期年의 상복에 負版, 衰, 適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례』는 주희가 40세 무렵 모친상을 당해 寒泉精舍에서 상례를 치를 때 지은 책으로, 짓자마자 도둑을 맞아 별세한 직후에 그의 아들이 우연히 얻게 된 것이다. 요컨대, 주희가 71세까지 생존했으므로 40대 이후의 학문적 성과가 『가례』에 반영될 수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가례질서』「三曰大功九月」 조목에 실려 있다.

---

25) 李瀷, 「祭式」, 『星湖全集』 권48. "『家禮』羹飯各一椀. 羹卽始祖祭所謂大羹, 與飯同設者也. 隨俗和菜亦無害. 「曲禮」云食居人左, 羹居人右, 爲便食也. 『家禮』雖云羹左飯右, 凡饌設皆未見與事生之道有別, 奚必羹飯獨異? 考之古禮, 亦未見如此. 意者當時俗例而朱子從之也. 今俗亦飯左羹右則恐不可違, 所謂君子行禮, 不求變俗是也."

> 양씨가 「상복」 주석의 "효자의 슬픔"을 인용하여 부판, 최, 적 3가지를 방친에게 사용할 수 없는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상복」 주석에서는 또 "絰이란 말은 實의 의미로 효자에게 충실의 마음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질 또한 방친에게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이 괜찮은가? 대개 저 주석은 매번 중요한 것을 거론하여 말했기 때문에 '효자'를 거론하면서 그 나머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상복」은 최후로 服制를 저술한 글인데, 이 세 가지 것에 구별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주자의 만년정론이 비록 이와 같으나, 『가례』에서는 단안하기를 대공 이하는 이 세 가지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제 때가 되면 이 세 가지를 제거하는데, 옛날 功衰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그 문장의 상하가 문을 잠그는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같으니,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만약 期年 이하에 애초 세 가지를 쓰지 않는다면, 연제에 이르러 제거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없다. 『가례』는 一代의 제도로 어겨서는 안 된다.[26]

부판은 상복의 등 위에 붙이는 베 조각으로, 등에 짐을 진 것처럼 슬픔을 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이는 것이고, 최는 상복의 왼쪽 가슴에 다는 작은 베 조각으로, 애절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적은 辟領이라고도 하는데, 부판의 양쪽 옆 깃 아래에 다는 베 조각으로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가례』 「상례」 成服 조목을 보면, 참최복에서는 부판, 최, 벽령을 단다고 하였고, 그 아래 삼월복까지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大功九月服에 이르러서야 부판, 최, 벽령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례』 본문의 의미대로 한다면, 기년복에도 부판, 최, 벽령을 달아야 한다.

대공구월 아래에 수록되어 있는 附註에는 "註疏를 살펴보면, 최, 부판, 벽령의 의미를 해석하여 자식만이 부모를 위해 쓰고, 방친에게는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례』에서 대공에 이르러 비로소 최, 부판, 벽령을 없앤 것은 『가례』가 선생이 초년에 지은 책이기 때문이다. 이후 선생이 집에서 행하던 예에는 방친에게 모두 최, 부판, 벽령을 쓰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이후에

---

26) 李瀷, 『家禮疾書』 喪禮 成服・三曰大功九月. "楊氏引「喪服」註'孝子哀慽'之語, 爲負版、衰、適三者之不用於旁親之證. 然「喪服」註又曰: '絰之爲言, 實也, 明孝子有忠實之心.' 然則絰亦不可用於旁親矣, 其可乎? 蓋彼註每擧重者言, 故擧'孝子'而包其餘也. 按, 「喪服」最後著服制之文, 而未嘗言三物之有別, 可以見矣. 朱子晩來定論, 雖如此, 『家禮』斷以大功以下, 不用三物, 而練則只去三物, 以存古者功衰之義, 其文上下關鎖, 不可毁也. 若朞以下, 初不用三物, 則至練而去之, 元無意義. 『家禮』更是一代之制, 不可違也."

의론이 정해진 것을 정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셋째, 童行에게 도둑맞는 일을 겪어서 그 사이에 뒤섞이고 결락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參禮에 撤床하는 절차가 없는 부류가 그것이다. 「가례서」에서 "『가례』가 이루어졌을 때 한 아이가 그 책을 훔쳐 달아났는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책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말이 나온다. 『가례』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祭式에는 徹床의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參禮에는 철상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가례질서』 본문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다. 『가례질서』「통례」 '爲四龕' 항목에서 성호는 四廟의 제도가 『開元禮』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諸侯에 준하는 작위를 가진 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며 제후국에서 벼슬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僭禮임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가례』의 본의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27] 참례는 犯分의식과 관련된다. 성호는 祝式, 題主과 관련하여 '夫人'의 칭호를 『가례』에 따라 '某氏夫人'으로 칭할 것을 제시하는데, 이것 또한 夫人과 孺人 그리고 婦人 등의 명칭을 신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28] 다산 정약용의 辨等의 논리로 진전되게 되기도 한다.[29]

4. 『성호예식』과 서인가례

> 禮 가운데서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冠婚喪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진시황의 焚書 뒤에 古經이 흩어져 없어지고 『儀禮』에 전해진 것도 士禮에 그치는데, 이를 미루어서 위로는 덧붙이고 아래로는 줄이면 王·公·卿·大夫 및 民庶의 예를 거의 알 수 있다. 한나라 이후로 대대로 作者가 있었으나 인습하고 고치

27) 李瀷, 『家禮疾書』 通禮 祠堂·爲四龕, "按, 『文獻通考』唐制二品以上四廟, 三品三廟, 五品以上不須爵者亦四廟, 四廟有始封爲五廟, 然則四廟之制, 自『開元禮』已然. 然此皆爵準諸侯者得用此數, 非人人所可行也. 朱子曰而今祭四世已是僭, 是則當是士大夫因循用此, 而又不必官尊也. 然仕於天子之國者, 俱是與公侯等例, 猶爲近之, 至仕於列國者, 一例循用, 則豈『家禮』之本意也?"

28) 李瀷, 『家禮疾書』 通禮 附朔望明魄辨. "按, 『曲禮』: 諸侯曰夫人, 大夫曰孺人, 士曰婦人. 若以犯分爲嫌, 孺人亦不當書也. 府君亦不當稱也. 均是犯分, 而於府君, 則從朱子, 於夫人, 則變而稱孺人, 奚可哉? 禮窮則同, 固有其例, 而有封, 則書, 無封, 則不書而已矣, 安在乎禮窮? 然則只合從『家禮』稱某氏夫人."

29) 박종천, 「조선 후기 성호학파의 입후설과 친족의식」, 『민족문화연구』 제65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김문용, 「정약용의 변등론과 유교 사회윤리의 확장 가능성」, 『국학연구』 제2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5 참조.

> 는 것이 법도가 없었는데, 송나라 사마광의 『書儀』가 가장 알맞게 되었다고 일컬어진다. 주자가 이를 인하여 『家禮』를 만들었는데, 부질없는 문식은 생략하고 근본과 실질에 힘써 한결같이 天理의 바름에서 나와 우뚝이 만세의 法程이 되었다. 그러나 책이 이루어진 뒤에 금방 잃어버려 미처 가다듬지 못했기 때문에 만년의 정론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으니, 이것이 후학의 한이다. (…) 성호 선생이 동방의 학술이 끊어진 뒤에 태어나 숨어 지내며 글을 저술하여 육경의 뜻을 발휘하되 특히 禮에 치력하였다. 풍속이 퇴폐하고 예가 문란해져서 인간다운 삶을 해치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는 것이 끝이 없으니, 선생이 이를 근심하여 고금의 예를 절충하고 士庶人의 예를 참작하여, 손자의 冠禮를 행하면서 『冠儀』를 만들고, 며느리를 맞아들이면서 『婦儀』를 만들고, 딸을 시집보내면서 『嫁女儀』를 만들고, 부인과 자식의 喪을 당하여 『喪威二錄』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祭式』을 만들었는데 비록 세상에 행해지지는 못했지만 일에 따라 법식을 세워 한 집안의 법칙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 선생의 조카 병휴 경협이 일찍이 그 遺文을 정리하고 그 禮說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다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여러 의절이 오래되면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것들을 合編하여 『星湖禮式』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가운데 앞뒤가 틀린 것이나 뜻이 의심스러워 결정하기 어려운 것에는 說을 붙여 분석하였다.[30]

순암은 『성호예식』 서문을 통해서 『성호예식』이 작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古禮가 진시황의 분서를 통해 민멸되고, 예제가 무너져 버린 역사를 개괄하면서, 그나마 士禮라도 갖추고 있는 『의례』를 추론하면 임금으로부터 民庶에 이르기까지 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또 송나라 사마광이 『書儀』를 짓고, 이를 기반으로 주희가 『가례』를 만들어 예제의 法程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책을 갖추자마자 도난당하여 주희의 만년정론과 차이나는 것이 많은 점을 애석해한다.

---

30) 安鼎福, 「星湖禮式序」, 『順菴集』 권18. "禮之切於人者, 不出於冠昏喪祭. 秦火之餘, 古經散佚, 『儀禮』所傳, 止於士, 推是而上加下, 王公卿大夫及民庶之禮, 可幾矣. 自漢以來, 代有作者, 而因革無法, 惟宋司馬氏『書儀』, 最號得中. 朱子因之以作『家禮』, 略浮文務本實, 一出于天理之正, 而卓然爲天下萬世所法程. (…) 星湖李先生生于東方絶學之餘, 隱居著書, 發揮六經之旨, 尤致力於禮. 而俗弊禮紊, 妨生僭分, 靡所底止. 先生憂之, 折衷古今之禮, 斟酌士庶之制, 冠孫而撰『冠儀』, 娶婦而撰『娶婦儀』, 嫁女而撰『嫁女儀』, 遭內子及子喪而撰『喪威二錄』, 又撰『祭式』, 雖不能行之於世, 而隨事立式, 要爲一家之則. (…) 先生從子秉休景協嘗釐正其遺文矣. 嘗裒輯其禮說矣, 又懼見行諸儀之久而泯也, 合編之, 名曰『星湖禮式』. 其前後之差異, 疑義之難決者, 爲說而辨之."

우리나라에서는 성호가 禮에 致力하였는데, 고금의 예를 절충하고 士庶의 예를 참작하여 손자의 관례를 행하면서 『冠儀』를 만들고, 며느리를 맞아들이면서 『婦儀』를 만들고, 딸을 시집보내면서 『婦女儀』를 만들고, 부인과 자식의 喪을 당해 『喪威二錄』을 만들고, 또 집안에서 행할 『祭式』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종질인 정산 이병휴가 유문을 정리하고 예설을 수집하고 합편해서 『성호예식』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성호의 조카 貞山 李秉休는 성호의 유문을 정리하고 그의 예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집안에서 행해지고 있던 것을 합편하여 『성호예식』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가운데 앞뒤가 틀린 것이나 뜻이 의심스러워 결정하기 어려운 것에 설을 붙여 분석하였다. 『성호예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 그 법식이 일체 『가례』의 成法을 따랐으나 간혹 다른 곳이 있었는데, 이것은 굳이 다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質과 文을 따르고 고칠 즈음에 억지로 서로 맞출 수가 없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의 번거로운 형식을 재단해서 간략하게 만들고, 지금의 소략한 절차를 참작해서 늘리기도 하여 위로는 국가의 제도에 어긋나지 않고 아래로는 인정에 합하도록 노력하였으니, 참으로 오늘날의 세상에 禮家의 準尺이라고 하겠다. (…)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예는 사람의 큰 제방이니, 제방이 무너지면 망하게 된다. 내가 서민인 이상 마땅히 서민의 예를 따라야지 어찌 사대부의 이름을 무릅쓰고서 분수에 넘치는 예를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대개 이 책을 만든 데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31)

이상은 성호의 고제 가운데 한 사람인 순암이 『성호예식』 서문에서 한 말이다. 『성호예식』은 『가례』의 成法을 준용하여 만든 것이지만 차이가 있는데, 質文과 沿革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성호예식』은 국가의 제도에 어긋나지 않고 시속의 인정에 부합하도록 작성한 것으로 禮家의 準尺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서민으로서 서민의 예를 따라야지 國典을 어기면서 사

31) 安鼎福, 「星湖禮式序」, 『順菴集』 권18. "其式一遵『家禮』成法, 而間有不同者, 非苟異也. 盖有質文沿革之際, 有不可強而相合者故也. 古之繁文, 裁以就簡, 今之踈節, 酌以從優, 上不悖于國制, 下務合于人情, 誠今世禮家之準尺也. (…) 始先生嘗曰: "禮者人之大防, 防壞則亂. 我爲匹庶, 當從匹庶之禮, 豈可冒士大夫之名而過爲非分之禮哉? 盖是書之作, 微意存焉. 其有補於風教, 豈淺淺也哉?"

대부의 예를 쓰는 것은 참람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근자에 『喪威日錄』을 지어 庶人을 위한 家禮로 삼고, 오직 儉約을 추구하여 자손들을 위한 長久之策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해괴하더라도, 나 스스로는 周公의 뜻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풍속은 간혹 살아서는 극진히 봉양하지 않으면서 죽으면 반드시 장례를 잘 치릅니다. 이것은 이승은 비워두고 저승을 채우는 격이니, 왕왕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들은 궁핍하여 걸핏하면 반드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니, 어찌 감히 남들이 선망하는 것을 좇는 데 힘써서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32]

성호는 순암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근래에 만든 『상위일록』이 庶人을 위한 家禮임을 말하면서, 儉約을 추구하여 자손들이 오래도록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세속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수도 있음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이 만든 『상위일록』은 周公이 制禮作樂한 뜻을 담았다는 자부심도 나타내고 있다. 세속의 풍속이 잘못되어 생시에는 봉양하지 못하면서 사후에는 장례를 두텁게 하는 것은, 이른바 이승을 비워두고 저승을 채우는 격이니, 매우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다.

성호는 순암에게 『상위일록』을 集成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고, 초고를 보내달라는 순암에게 부쳐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성호 자신의 자손들이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까지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훗날을 기약해야 함을 전하고 있다.[33] 곤궁하여 敗家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성호의 생각을 존중하는 순암은 자제들에게 관례와 혼례는 자신의 만든 것으로 치르지만, 상례와 제례는 성호의 『상위일록』을 준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34]

---

32) 李瀷, 「答安百順[丙子]」, 『星湖全集』 권25. "近草「喪威日錄」, 爲庶人家禮, 惟儉是趨, 爲子孫長久計. 雖駭于俗觀, 竊自謂得周公之意. 今俗或生不崇養, 死必飾葬, 虛地上以實地下, 往往可憫. 吾輩窮且匱, 動必慮居, 其敢務循視瞻, 不憚破亡耶?"

33) 李瀷, 「答安百順[丙子]」, 『星湖全集』 권25. "庶人家禮, 宜有集成. 今俗財出無地, 凡有事輒擬貴仕, 窘敗可立竢. (…) 吾爲「日錄」者, 冠昏喪祭, 一從貧室爲節度, 只冀吾子孫守之, 不卹衆口之嗤點, 亦不欲佗人之倣效. 今欲依教寄呈, 而爲人傳看, 容竢異日矣."

34) 安鼎福, 「示弟鼎祿, 子景曾遺書[己卯]」, 『順菴集』 권14. "冠婚之儀, 家有小草, 可以依行. 喪祭之禮, 丈

이 밖에도 성호는『가례』의 最長房의 제도를 변개할 필요가 있으며, 祭饌의 가짓수도 家計에 따라 수정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맹목적으로『가례』본문만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주희의 본지를 확인해야 함을 힘써 주장하였다.[35] 이는『가례』를 기준으로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가례』의 禮文을 다르게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 禮에 있어서는『家禮』를 근본으로 하였는데, 또한『家禮疾書』를 통해 해석을 가하였다.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儀禮』에까지 미치고『禮記』와『通典』등의 책까지 두루 통섭하였다. (…) 또 풍속이 날로 사치해져 士友들 사이에 몹시 빈천하면서도 權貴를 본받아 사치함으로써 가계를 지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에 고금의 마땅함을 참작하여 관혼상제의 규식을 지어 一家의 예로 삼고 친한 벗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는 孔聖께서 "공순하지 못한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편이 낫다."라고 하신 말씀과 주자께서 "浮華와 文飾을 줄이고 근본과 실질을 편다."라고 하신 말씀의 遺意를 받든 것인데 그 규식과 節目이『喪威日錄』에 들어 있어 본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다.[36]

성호는『가례질서』를 통해『가례』를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례는『의례』와『예기』그리고『통전』등에 기재되어 있는 다양한 저술을 섭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풍속은 權貴들이 행하는 奢侈를 너나할 것 없이 따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家計를 지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저술한 것이 바로『상위일록』즉,『성호예식』이었던 것이다. 이는 공자가 "不孫할지언정 차라리 固陋한 것이 낫

席『喪威日錄』, 必行無疑, 可以遵用. 而以家力之不及, 不能行四時之享, 惟用冬夏二至, 祭于祠堂, 墓祭先代, 只有寒食一祭, 奉祀位有秋夕寒食二祭, 是亦踈數之別也. 皆有意存焉, 而未及編出一規, 奈何?"

35) 李秉休,「家狀」,『星湖全集』부록 권1. "今之禮, 乃守家禮之文, 而失朱子之心者也. 然則宜以後定之論爲主, 宗子親盡之後, 則長房依伊川說只以紙榜行事於其家可矣. (…) 惟懼不稱貧家, 後若凋落益甚, 只用四籩四豆一鉶, 又去羞豆, 則與溫公禮合矣."

36) 尹東奎,「行狀」,『星湖全集』부록 권1. "其於禮則以『家禮』爲上, 而亦有『疾書』之解. 因溯源而及於『儀禮』, 旁通戴經『通典』等書 (…) 又慨風俗日奢, 士友間貧賤旣甚, 而慕效貴勢, 莫可支吾. 於是參酌古今之宜, 撰冠昏喪祭之式, 以爲一家之禮, 而要與親友共之. 蓋出於孔聖與其不孫也寧固及朱夫子略浮文敷本實之遺意, 而其規法節目, 在『喪威日錄』, 可考而法也. 此不詳著."

다."고 한 말과 주희가 "浮文을 생략하고 本實을 펼치는 것이 낫다."고 한 말의 遺意를 따르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 계미년[1763, 영조39], 선생의 나이 83세 때 마침 국가에서 규례에 따라 노인을 우대하는 恩典을 베풀게 되어 자급이 올라 僉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그해 12월 17일에 가벼운 질환으로 인하여 침실에서 운명하였다. 襲衣는 常服을 쓰고 斂具는 紙衾을 썼으며 銘旌은 일찍이 '星湖僿士驪州李公之柩'라는 10글자를 친히 종이에 써 둔 것을 널 위에 덮었고, 관은 옻칠하지 않고 松津을 발랐으며, 屬纊한 뒤에는 즉시 찬장에 있는 음식으로 奠을 올리고 成殯하기 전까지는 조석으로 올리는 饋奠을 폐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선생께서 평소 정해 둔 것이었다. 成服하던 날에 문하의 제자들이 모두 弔服에 加麻하고, 族人들은 비록 袒免親을 넘어섰더라도 모두 布巾과 布帶를 하고 장례가 끝난 뒤에 벗었다.[37]

성호는 1763년 83세에 침실에서 운명하였다. 襲衣는 평상복을 사용하였고 斂具는 종이이불을 사용하였고, 銘旌에는 성호가 친히 써 둔 '星湖僿士驪州李公之柩'[성호의 징사 여주 이공의 널]라는 10글자를 사용하여 널 위에 덮었고, 관은 옻칠하지 않고 송진만을 발랐다. 屬纊한 뒤에는 찬장에 있는 음식으로 奠을 올리고 빈소를 차리기 전까지 조석으로 饋奠을 올렸다. 이것은 모두 성호가 평소에 정해둔 그대로였다. 3일후 成服하던 날 문하의 제자들이 모두 弔服에 首絰을 하였고, 袒免服을 넘어서는 친족들도 모두 布巾과 布帶를 하고 장례를 마친 뒤에 벗었다.[38] 士庶의 禮를 준비하고 행했던 것이다.[39]

---

37) 李秉休, 「家狀」, 『星湖全集』 부록 권1. "癸未先生年八十有三, 適値國家擧優老例典, 陞資授僉知中樞府事. 其年十二月十七日, 以微疾啓手足於寢室. 襲用常服, 斂用紙衾, 銘旌嘗有親書星湖僿士驪州李公之柩十字於紙者, 用鋪柩上, 棺不用漆, 塗以松脂, 屬纊後卽設餘閣奠, 殯前不廢朝夕饋, 此皆先生平日所定也. 成服之日, 門弟子皆弔服加麻, 諸族人雖在袒絻之外, 皆布巾布帶, 旣葬而除之."

38) 문인 소남 윤동규의 행장에는 성호의 장례절차가 좀 더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尹東奎, 「行狀」, 『星湖全集』 부록 권1. "襲用紙衾, 去握手履, 設飯含, 不用平生落髮爲枕, 剪爪以實棺角, 皆紙包有銘. 又以紙親書星湖僿士驪州李公之柩十字, 幎巾魂帛, 亦以紙爲之, 而幎巾染黑, 棺厚二寸許, 溶松脂以代楸, 遷尸奠用餘閣. 殯前朝夕之饋亦不廢, 及葬贈玄黃而以紙代絹, 不用柩衣功翣等. 綳用藁索, 皆平昔所定也. 門人受業及族在袒免之外者, 或白布巾帶, 或弔服加麻, 及葬而除, 或有素帶而終期者."

39) 李秉休, 「家狀」, 『星湖全集』 부록 권1. "其記身後定禮, 則不用大斂布, 不用柩衣, 綳用稿索, 空用葛茀. 又衾旌之外, 亦多以紙爲之曰: 東京以前無紙, 故禮無所見, 人卻賤之, 其實可貴, 斂以紙衾何害? 昔周太祖命世宗曰斂以紙被, 不然吾不福汝矣. 今俗生不崇養, 而死必飾葬, 甚可惡也."

성호의 이러한 庶人家禮 편찬 작업은 庶姓의 종족을 하나로 단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에 있는 족인들을 小宗의 옛집에 모이게 하여 친목을 돈독히 하고 우애를 다지도록 하는 한편, 시골에 있는 족인들을 大宗의 집에 모이게 하여 祖宗을 존경할 줄 알게 하려는 그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문중의 결속을 위한 노력인 동시에, 庶人들이 의례를 준수하여 의례의 확장을 도모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40] 요컨대, 검소와 절약을 통해 의례를 행함으로써 종족의 결합 및 서인들이 행례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의 예설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 일찍이 「入儉說」을 지어 세상 사람들이 맛난 음식을 좋아하고 남몰래 치장하는 것을 풍자하였다. 늘 말씀하기를, "굶주림을 구제하는 데에는 콩만 한 것이 없다."라고 하여 흉년이 들면 반드시 콩을 삶아 죽을 만들어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였다. 콩죽 한 그릇과 된장 한 종지와 콩기름에 버무린 겉절이 한 접시를 차려 놓고 족인들과 밤새워 환담하였는데, 모임의 이름을 三豆會라고 하였으며, 또 「半菽歌」를 지어 스스로 즐겼다. 아들 孟休가 일찍이 남쪽 고을의 원이 되어 고을 소산의 음식물을 보내자 선생이 물리치고 편지를 보내 경계하기를, "무릇 백성에게 거두는 것은 열에 여덟아홉은 옳지 못한 것이니, 이것으로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이 될 말이냐? 내가 내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때에 맞추어 내 밭을 갈면 굶주림과 추위는 면할 수 있다. 거위 고기는 나가서 토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선생의 뜻을 볼 수 있다.[41]

성호는 운명하는 그날까지 검약함을 지키며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검소함에 들어가는 법에 대한 설이라는 제목의 「입검설」은 성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글이다. 세속의 사치와 화려를 비판하고 검소와 절약을 주장하는 글이다. 성호는 "무릇 인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초상, 제사, 혼인, 빈객 접대보다 소비가 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선조의 제사를 받드

---

40) 李秉休, 「家狀」, 『星湖全集』 부록 권1. "先生謂立宗, 將以合族也. 又置宗田若干, 爲燕會之費, 先會在京族人於小宗舊第, 使之敦親崇好, 次會在鄕族人於大宗之家, 俾知尊祖敬宗, 至今諸族之修睦不替, 皆先生之敎也."

41) 李秉休, 「家狀」, 『星湖全集』 부록 권1. "嘗撰「入儉說」, 諷世之好羞闇飾, 每謂救飢莫過於豆, 歲荒則必煮豆爲粥, 以賠其乏. 嘗設豆粥一杆豆醬一栝黃卷葅一盌, 與族人終夕驩譫, 名曰三豆會. 又作「半菽歌」以自娛, 子孟休嘗爲南縣宰, 以邑物送餉, 先生卻之, 寄書戒之曰凡斂於民者, 八九是非理, 以此奉親可乎? 吾留吾廬, 時穡吾田, 足以救飢免凍, 鵝鵝之肉, 當出而哇之, 此可以見先生之志矣."

는 것이 혼인보다 중요하고, 빈객을 접대하는 것이 자신의 의식주보다 중요하다. 가난한 선비의 집에서는 초상과 제사를 절약해서 간소하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혼인은 말할 것이 있겠는가?"[42]라고 하였다.

성호는 三豆會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黃豆로 죽을 쑤고 콩나물로 김치를 만들며 콩으로 장을 지지는 세 가지였다. 친척을 모아 환담하면서 희롱삼아 말하기를, "제군은 이것이 공자의 가법임을 아는가? 그 말에 '콩을 먹고 물을 마신다[啜菽飮水].'고 했는데, 콩은 마시는[啜] 물건이 아니니 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 노공과 범충선은 벼슬이 높아도 오히려 그러했거늘, 하물며 우리같이 띠집에 살면서 생계를 이어나갈 전답이 없는 자이겠는가? 이것도 또한 이어나갈 수 없으므로 글을 지어 자손에게 경계한다."라고 하였다.[43]

반숙은 쌀과 콩을 절반씩 섞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성호가 "나는 가난한 삶에 능숙한데, 좋은 품질의 콩을 구하다가 붉은 빛깔의 씨알이 굵고 껍질이 부드러운 것을 얻어서 쌀에 섞어 밥을 지었더니 맛이 달아서 도리어 나았다. 드디어 「반숙가」를 지어 가난한 집안에 전하여 보여 주었다. 그 후에 검은 점이 박힌 것, 푸른 것, 희면서 살짝 누른 것들을 얻었는데, 씨알의 굵기가 다 보통 것과 달라서 전자의 붉은 것과 흡사하며, 흰 것은 더욱 나아서 껍질이 엷어 익으면 쩍쩍 벌어지곤 한다. 그래서 항아리의 곡식이 이에 힘입어 자못 절약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44]

성호의 이와 같은 검약함은 사후 성호학파에게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남 윤동규는 성호가 제시한 간소하고 검약한 방식의 의례를 실천했는데, 이는 그의 경제적 형편도 고려된 것이다.[45] 순암 안정복 또한 성호 이익의

---

42) 李瀷, 「入儉說」, 『星湖全集』 권41. "凡人家所需日用之外, 莫費於喪祭婚姻賓客, 而奉先重於婚姻, 接賓重於自奉. 貧士之家, 已於喪祭殺節從簡, 況婚姻之可已而得已哉?"

43) 李瀷, 『星湖僿說』 권16 人事門 三豆會. "余近作三豆會, 黃豆為粥, 黃卷為菹, 與豆醬為三. 集親戚而懽讌戲謂曰: 諸君知此為孔子家法乎? 其言曰: 啜菽飮水, 菽非可啜之物, 非糜粥而何? 文范位高顯猶然, 況我桑楮之室, 無田可食者耶? 此又不可以常繼, 故為成文字遺戒子孫."

44) 李瀷, 『星湖僿說』 권9 人事門 半菽啜菽. "余巧於居貧, 求菽之美品, 得赤者體大而皮軟, 和在米中味甘反勝, 遂作米菽歌, 傳示貧灶, 後得黑點者, 碧者, 白而微黃者, 皆體大異於常品, 與赤相衡而白尤勝, 皮薄已熟, 則皴裂, 可證瓶粟頗賴以撙節."

45) 박종천, 「소남 윤동규의 의례 생활과 예학 연구」, 『장서각』 제3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43면.

예학을 계승하여 경제적 여건에 맞게 의례의 규모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검을 통한 경제적 기반 구축을 시도하였다.[46] 다산 정약용은 성호가 중시하는 時宜와 관련한 절검을 중시하면서도 家計에 따라 厚禮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경제력에 따른 행례의 조절을 가능하게 해준다.[47] 이렇듯 검약의 의례적 실천을 중시하는 성호의 예학은 그의 사후 성호학파의 학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46) 박종천,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광주안씨 종계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제26호, 한국실학학회, 2013, 44면.
47) 전성건, 「星湖學派의 禮學과 茶山禮學의 定位—『家禮』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제24호, 한국실학학회, 2012, 188면.

▮ 참고문헌

『家禮疾書』, 『東坡全集』, 『星湖僿說』, 『星湖全集』, 『少眉山房藏』, 『順菴集』, 『呂氏春秋』.

김남이, 「18세기 喪·祭禮 실천과 宗統의 이상—星湖 李瀷의 承重·立後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35집, 동양고전학회, 2009, 387-414면.

김문용, 「정약용의 변등론과 유교 사회윤리의 확장 가능성」, 『국학연구』 제2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5, 189-225면.

김정민, 「星湖 李瀷의 禮思想과 實踐의 實例—『星湖先生禮式』 所在 冠婚禮의 境遇—」, 『동양예학』 제16집, 동양예학회, 2007, 297-318면.

盧仁淑, 「星湖 李瀷의 《家禮疾書》考—禮學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一考察—」, 『인문학연구』 제20집, 중앙대 인문학연구소, 1993, 3-14면.

박종천,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광주안씨 종계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제26호, 한국실학학회, 2013, 43-87면.

_____, 「조선 후기 성호학파의 입후설과 친족의식」, 『민족문화연구』 제65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249-288면.

_____, 「소남 윤동규의 의례 생활과 예학 연구」, 『장서각』 제3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32-63면.

서정화, 「조선후기 실학파의 혼례론—李瀷, 丁若鏞, 許傳을 中心으로」, 『한국철학논집』 제40호, 한국철학사연구회, 2014, 95-125면.

이봉규, 「실학의 예론—성호학파의 예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24집, 한국사상사학회, 2005, 105-136면.

장동우, 「조선후기 가례담론의 등장배경과 지역적 특색—『주자가례』에 대한 주석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13집, 한국국학진흥원, 2008, 97-127면.

전성건, 「『사례가식』 연구」, 『다산학』 제19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1, 55-84면.

_____, 「星湖學派의 禮學과 茶山禮學의 定位—『家禮』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제24호, 한국실학학회, 2012, 147-193면.

崔錫起, 「17-18세기의 學術動向과 星湖 李瀷의 經學」, 『남명학연구』 제16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2003, 103-161면.

【Abstract】

Historicity of Shorthand of *Family Rituals* and *Rituals of Sung-ho Family*

Jeon, Sung-Kun*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direction of *Shorthand of Family Rituals* and *Rituals of Sung-ho Family*, and look at what the problem consciousness he presented was. Lee Ik was a private student of Toegye, and he wanted to develop and expand the philosophy and ideas of Toegye as a member of the Toegye school through exchanges with men in the Gyeongsang provinces.

Ritual learning was no exception. While Lee Ik succeeds ritual learning of Toegye, he will create a new example by criticizing the theories of Kim, Jang-saeng and other scholars.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are *Shorthand of Family Rituals* and *Rituals of Sung-ho Family*. In particular, *Rituals of Sung-ho Family* creates a bookcase that differs from family rituals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the rituals held by the high official and thus seeks to expand the practice. This was based on his social status, and he made an ordination according to the order of his identity by stipulating the rituals of the high official, and the rituals of those in his or her status as well as those in people.

His research on *Family Rituals* of the time mainly focuses on finding and supplementing the so-called 'the decided opinion' that Zhu Xi wrote in middle age. And it takes into account all aspects of exegesis, studying historical evidence and rituals. However, Lee Ik tried to expand the practice of ritual practice by creating family rituals for common people that could be performed except the high official. It can be said that he did not only assemble the great and the small clan and made the sect into a ritualistic practice of the ordinary people of the country districts.

Keywords: Lee Ik, *Family Rituals*, *Shorthand of Family Rituals*, *Rituals of Sung-ho Family*, Family Rituals for Common People.

접수일: 2020.03.24. ‖ 심사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5.18.

* Research Professor, Dept. of Eastern Philosophy, Andong National Univ.